

제310회 임시회  
2012. 5. 9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 : 장선배 의원 외 6명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4월 16일
- 회부일자 : 2012년 5월 2일

### 3. 제안이유

- 재해구호·노인복지·장애인복지·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자립장학금 용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심의를 현행 조례에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
-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

### 4. 주요내용

- 현행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(안 제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(안 제4조 및 제10조)
  - “범위내에서” → “범위에서”
  - “각호의 1” →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
- 「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제3조제9호 삭제(부칙)
  -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“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”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기능을 복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대행하도록 하였고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정비하였으며,
-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‘다른 조례의 개정’을 통해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9호를 삭제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별첨 : 도정조정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요사항 비교

## 주요 사항 비교표

구 분	도정조정위원회	사회복지위원회
설치목적	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	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·건의
구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당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</li> <li>- 실·국·본부장, 정책기획관, 공보관</li> </ul> </li> <li>● 위촉직(10인 이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분야별 유관기관 공무원</li> <li>- 학계와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당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</li> </ul> </li> <li>● 위촉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</li> <li>- 사회복지법인 대표</li> <li>- 사회복지 비영리법인·단체 대표</li> <li>- 사회복지 수요자 대표</li> <li>-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</li> <li>-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</li> <li>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</li> <li>-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</li> </ul> </li> </ul>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</li> <li>● 정부 시달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</li> <li>●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 사항</li> <li>●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</li> <li>● 민원 관련 조정 및 제도개선 사항</li> <li>● 각종 가격 및 요금의 조정</li> <li>● 품질관리 정착 관련 시책 연구·발전</li> <li>●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</li> <li>● <b>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</b></li> <li>● 근로청소년 장학생 심사</li> <li>●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사항</li> <li>●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</li> <li>● 보안심사 및 제안심사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</li> <li>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」 제29조 제1항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등</li> </ul>
주관부서	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	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